

##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7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1999. 11. 24.  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### 1. 제안이유

사천시 행정기구 및 직제개편으로 수도과와 하수과가 통폐합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하수도사용료를 수도과에 위탁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을 하수과와 수도과 협의에 의해 부담하는 조항을 삭제(안 제13조제4항)

### 3. 법적근거

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80호

### 4. 조례(안) : 따로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 안 )
<p>제13조(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(생략)</p> <p>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사천시 수도과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 경비부담금은 하수과와 수도과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.</p> <p>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13조(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&lt;삭제&gt;</p> <p>⑤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